

이사회 운영규정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07년 5월 21일
개정 2012년 8월 15일
개정 2013년 8월 9일
개정 2018년 8월 14일
개정 2019년 12월 18일
개정 2022년 1월 25일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

제 3 조 (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4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년1회로 하고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의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된다.

제 6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당해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동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사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결의로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부의사항
 2. 주주총회의 소집사항. 위임사항. 제출사항
 3. 회사의 중요한 경영계획 및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소송제기와 화해,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
 7. 회사가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선 대응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8. 주식의 양도, 신주의 발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자금의 차입 및 자본 증가에 관한 사항
 10.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11. 주주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주주들의 진정, 청원에 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3. 임원과 회사간의 거래
 14.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와 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
 15. 영업장의 위탁운영 및 관리, 임대 (건당 월 1,000만원 이상)
 16. 회원가입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1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8. 예약제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단체팀 관리에 관한 사항
 20. 각종 공식경기의 결정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1. 10팀이상의 비등록단체팀 개최 승인에 관한 사항
 22. 기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 결의할 안건은 이사회개최일 5일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사진행 협조)

- ①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의사진행 방해 제재) 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저해하는 언행으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임원에 대하여 일시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10 조 (의결방법의 특례) 대표이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결정으로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 등 이사가 아닌 자를 출석케하여 의안에 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사회내 분과위원회)

- ①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조 (특별위원회) 이사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특별위원회의 조직구성은 이사 및 해당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2명이내의 위원을 둘수 있다.
3. 특별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특별위원회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거나 설치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만 존속한다.

제 15 조 (위임전결사항) 이사회는 사무처리의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전결 할 수 있다.

1. 고정거래처로부터 물품구매(상품, 식품, 저장품)
: 월간 건당 2,000만원 이하
2. 수선 및 보수공사, 용역비, 보험료 : 건당 2,000만원 이하
3. 고정자산 취득(장비, 집기비품, 공구 등) : 건당 2,000만원 이하
4. 영업장 운영 위탁 및 임대 : 월간 건당 1,000만원 이하
5. 의무적 경비(급여, 상여금, 각종수당, 제세금 및 공과금 등)
: 지급액 및 납부금액

제 16 조 (임원실비변상지급) 임원 및 이사회에서 위촉된 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출장, 차량 등 경비 발생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간사는 이사회에서 그 전 이사회의 의사록을 낭독하고 참석이사에게 고지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 4.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 4.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 8.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 8.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 12.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 1. 25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 ①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규정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 전의 제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분과위원회 규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이하“회사”라 한다)의 이 사회내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무분과위원회
 2. 경기분과위원회
 3. 상별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분과위원장 1명, 분과위원 3~4명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

제 3 조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선출)

-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참석 분과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분과위원의 임기)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5 조 (분과위원회의 소집)

-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분과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간사는 회일의 3일전에 일시와 장소, 상정할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이 모두 동의할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통지의 방법은 서면, 전화, 팩스,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 6 조 (분과위원회의 성립)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의하여 성립된다.

제 7 조 (분과위원회의 결의방법)

- ① 분과위원회의 결의는 출석분과위원의 과반수의 가결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당해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과위원은 동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분과위원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 ①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위원회
 - 가.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경기분과위원회 및 상별분과위원회 이외의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2. 경기분과위원회
 - 가. 경기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핸디캡 사정 및 단체팀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각종 공식경기의 결정 및 준비에 관한 사항
 - 라. 3팀이상의 비등록단체팀 개최 승인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경기 관련 사항
3. 상별분과위원회
 - 가. 회원의 상별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

제 9 조 (주심상별위원의 지명)

- ①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표창포상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상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② 주심상별위원은 표창포상 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표창포상 대상 및 내용과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심상별위원은 지정 받은 표창표상 건 또는 징계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분과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10 조 (표창표상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과 클럽내장객에게는 심
의 후 표창표상 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공식경기 등에 입상하여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 자
2. 회사의 매출향상 및 재해의 미연방지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표창표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자

제 11 조 (표창표상 시기) 회원과 클럽내장객 대한 표창표상시기는 다음과 같
이 정한다.

1. 매년 12월말
2. 기타 필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12 조 (표창표상 절차) 회원과 클럽내장객에 대한 표창표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1. 대표이사는 표창표상의 상신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1호 서식의 표창□
포상신청서 공적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는 표창표상 대상자를 심의한 후 상별분과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다.
3. 위원회는 표창표상 대상자 및 포상의 종류, 부상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
에 상신한다.
4. 이사회의 승인 후 대표이사는 표창표상자와 시기, 내용에 대하여 사내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3 조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에서 정한 제반규칙 및 골프에티켓 등을 위반했을 때
2. 골프장 및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유포, 회사와 골프장 이용
객, 관련 종사자의 업무방해, 골프장 이용방해, 기타 명예 등을 훼손했
을 때
3. 골프장 및 골프장 이용, 캐디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명백한 허위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물적, 신용, 영업, 기타 명예적 손해를 끼쳤을 때
5. 임원 등 선거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임원선거를 방해했을 때
6. 주주총회 개최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때
7.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8.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행위
9. 폭력, 모욕, 도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10. 코스손상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했을 때
11. 직원 및 캐디에게 폭행 및 폭언, 성폭행, 성희롱 등을 했을 때
12. 공식대회에서 스코어를 조작했을 때
13. 비회원이 회원 명의를 도용하여 입장 했을 때
14. 1년 이내 징계의 종류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15.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제 14 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6개월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3. 1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4. 2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5. 제명

② 위 징계 결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정관 제5조의 주주의 자격 및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다만, 제명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제 15 조 (징계개시의 청구)

①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는 제14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징계 견을 심의하여 징계하여야 된다고 인정되면 상벌분과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 ③ 대표이사는 상벌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상벌분과위원장에게 징계개시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상벌분과위원장은 대표이사의 징계 개시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개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징계개시청구 절차)

- ① 징계개시 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 사실, 징계 이유서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 청구서를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 청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 받을 자가 소송기타 법적절차의 착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하거나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이다.

제 17 조 (징계개시 청구의 통지)

- ① 분과위원장은 징계개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개시 통지서와 징계개시 청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징계개시 통지서에는 징계혐의사실,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제출, 증인의 신청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최초의 심사기일 통지는 그 기일의 5일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징계개시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본인 잠적 기타 부득이한 출석통지가 불가능할 시 발송한 등기우편 2회 송부 근거를 남기고 위원회 임의로 징계처분하고 징계 회의록에 이 사실을 기록한다.

제 18 조 (심사기간) 분과위원회는 징계개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게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9 조 (징계대상자의 소명기회 부여)

- ① 징계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징계대상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여 조사서 또는 진술에 가름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징계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20 조 (심사방법)

- ① 분과위원회는 조사관이 되며 조사관은 이사회의 명에 의한 조사권한을 대행한다.
- ② 조사시는 사실 확인 및 증거와 본인을 신문하여 진술조서 또는 본인 자필 진술서를 받을 수 있으며,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징계대상자는 조사관에게 사실을 진술하고 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조사거부시 조사관은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사서 또는 진술에 가름할 수 있다.
- 조사시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관계문서 또는 물품을 환수 통제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

제 21 조 (제척, 기피, 회피)

- ①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사건은 심사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 본인이 제□항 또는 제□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 22 조 (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은 회원명부에 등재된 주소지로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한다.

제 23 조 (결 정)

- ① 분과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야 한다.
-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분과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 (징계결정서) 징계의 의결은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 결정서에는 의결내용을 기재하고 분과위원장과 출석한 분과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25 조 (결정의 통보 및 재심의 등)

- 분과위원회는 징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는 위 □항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가부를 결의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의장인 대표이사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상별분과위원회의 결정대로 징계결정을 하는 결의가 있을 때에는 자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가 재심의를 결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26 조 (분과위원회 의사록)

-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분과위원회의 의사록은 출석한 분과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 5.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 8.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 8.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 8. 14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규정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 전의 제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창표상 신 청 서

표창표상 대상자	회원번호		가입일자	
	성 명		주소	
표창의 종류				

◆ 공적개요

◆ 공적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이 표창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시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年 月 日

(주)창원컨트리클럽 이사회 귀중

(주) 창 원 컨 트 리 클 럽

징계사유의 유형

징계종류	징계사유	비고
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 개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유가 매우 염중한 자 ◦ 직원 및 캐디에게 성폭행 등을 한 자 ◦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2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 임원 등 선거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임원선거를 방해한 자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을 손상케 한 사유가 중한 자 ◦ 직원 및 캐디에게 폭행 및 성추행 등을 한 자 ◦ 고성과 폭언, 욕설 등으로 영업방해, 업무방해를 한 자 ◦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1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캐디에게 폭언, 모욕, 욕설, 성희롱 등을 한 자 ◦ 공식대회에서 스코어를 조작한 자 ◦ 비회원이 회원 명의를 도용하여 입장한 자 ◦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징계종류	징계사유	비고
6개월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1년 이내 징계의 종류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 코스손상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 ◦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에서 정한 제반규칙 및 골프에티켓 등을 위반한 자 ◦ 폭력, 모욕, 도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코스손상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 ◦ 지역 플레이 한 자(9홀 2시간 20분 초과한 자 또는 한 개홀을 비운 자) 	

징계 절차

1. 징계개시 신청(대표이사 → 이사회 보고(심의 후 징계 개시 결정))
2. 징계개시 청구(대표이사 → 상벌분과위원장)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징계 혐의사실, 징계이유서 등 기재)
(징계 개시청구서 1부, 1년내 징계개시 청구)
3. 상벌분과위원회는 징계개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기간
(2개월 내 징계여부 결정. 단, 1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4. 상벌분과위원회 개최 통지(상벌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5. 주심상벌위원 지명 → 생략가능
6. 징계개시 통지(상벌분과위원장 → 징계 대상자)
(징계개시 청구서 사본 및 징계개시 통지서 1통 송부)
7. 상벌분과위원회 출석 통지(상벌분과위원장 → 징계 대상자)
8. 상벌분과위원회 의결기록부 작성
9. 상벌분과위원회 부의조서 작성
10. 징계결정서 작성(상벌분과위원장과 위원 서명 또는 날인)
11. 징계결정 통보 및 통지(상벌분과위원장 → 대표이사 서면 통보)
12. 대표이사 → 이사회 소집 → 상벌분과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부 의결
13. 징계처분 통지서 발송(대표이사 → 징계 대상자)

징계개시 청구서

상별분과위원장 귀하

징계개시 청구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회원번호	회원권 취득일자	비고

2. 징계 혐의사실

3. 첨부 : 징계이유서 1부

년 월 일

(주) 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상별분과위원회 개최 통지서

상별위원 귀하

년도 제 차 상별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안건 :

(주)창원컨트리클럽 상별분과위원장 (인)

정계개시 통지서

정계개시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정계 협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회원번호	회원권 취득일자	비고

2. 정계 협의사실

3. 심사기일 : . . .

4. 상별분과위원회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첨부 : 상별분과위원회 출석통지서

년 월 일

(주)창원컨트리클럽 상별분과위원장 (인)

제 차 상벌분과위원회 의결 기록부

1. 개최일자 : 년 월 일

2. 개최장소 : 당사 회의실

3. 참석인원 :

4. 부의안건 :

5. 상벌분과위원회 회의내용

작성자 상벌분과위원회 간사 성 명 :

상벌분과위원회 부의조서

년 월 일
년 제 차 호

1. 제 목 :

2. 관련대상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회원번호	회 원 권 취득일자	비 고

3. 상벌내용

상벌요약

--

4. 기타 참고사항 (과거 징계사항 등)

--

5. 상벌조치

상벌제의		상벌결정	
------	--	------	--

징계 결정서

(징계 의결) 년도 제 차 호

- 개최일시 : 년 월 일

- 개최장소 :

제 목					
관련자 및 의결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의결내용	비고
				아래기재	

의결내용 :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상벌분과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징계처분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	주소 :
징계처분 내 용	일 자	
	징 계 내 용	
징계사유		
비 고		

(년 제 차 상벌분과위원회 의결)

년 월 일

(주)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인

상벌분과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출석이유	귀하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상벌분과위원회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출석일시		
출석장소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술을 포기코자 할 때에는 본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하단의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고 소정일시까지 출석치 않을 때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불가능할 시는 서면 진술도 가능함 	
비고		

년 월 일

(주)창원컨트리클럽 상벌분과위원장 (인)

〈절취선〉

A horizontal row of 24 empty square boxes,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their answers in a grid format.

상별분과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증

성명		주소	
----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소집되는 상벌분과위원회의 출석 통지서를 틀림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주)창원컨트리클럽 상벌분과위원장 귀하

〈절취선〉

A horizontal row of 20 empty square boxes,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their answers in a grid format.

A horizontal row of 20 empty square boxes, each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handwritten responses.

상벌분과위원회 출석 포기서

성명		주소	
----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소집되는 상벌분과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으나
_____으로 인하여 출석을 포기하고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며, 상벌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주)창원컨트리클럽 상벌분과위원장 귀하